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083

발의연월일: 2022. 11. 3.

발 의 자: 송재호·주철현·위성곤

김한규・오영환・조정식

최종윤 · 임호선 · 김수흥

김병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,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예정임.

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는 양식어업 등으로의 진입장벽 완화 및 젊은 어업인 귀어를 촉진하여 어촌지역 고령화 해소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유지가 필요함.

이에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(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의 변경)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

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3항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	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	③
업권·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	
득세, 어업권·양식업권에 관한	
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	
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	
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	
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	
세를 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지 각	<u>2025년 12월 31일</u>
각 면제한다.	